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가합23908(본소), 2018가합25843(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정희권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배경수

변론 종결2020. 6. 18.

판결 선고2020. 8.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0,5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263,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공사 중 남코스 18개홀과 북코스 6 내지 9번, 15 내지 18번 홀 등 총 26개 홀의 나이트조명 교체 공사를 도급금액 1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진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조건

3. 공사기간 : 2016. 3. 31. ~ 2016. 6. 10.

4. 도급금액 : 1,400,000,000원

5. 선급금 : 280,000,000원

6.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 계약체결시 20% / 현장도착 30%/50%에 대하여는 매월 기성

9. 지체상금율 : 0.2%(일)

제14조(대금지급)

(1) 선급금을 계약의 20%로 하되 선급금보증서 제출 후 15일 이내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로 하되 현장도착 후 15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잔금 50%는 매월 기성으로 정산하되 기성청구가 필요 없이 시운전 완료시 30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2016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이행지체)

(1)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6조(인계인수)

(1) 원고가 계약한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또는 감독관)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공사완료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원고가 계약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내역서

특기사항 : 평균 티 200Lux, 페어웨이 130~150Lux, 그린 300~350Lux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구 65개, 폴 18m 2개, 폴이설 4개는 원고가 부담 설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로부터 선급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6. 10.경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4억 원에서 이미 지급된 2억 8,000만 원과 남코스 15번 홀 우측 그린 주변에 현재 설치된 조명탑 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 9,438,000원을 각 공제한 1,110,562,000원(= 14억 원 - 2억 8,000만 원 - 9,4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조건 제16조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약정한 조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페어웨이 카트도로에서 골프채 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린에서 홀컵이 보이지 않는 등 야간 골프경기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여서 사회통념상으로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날인 2016. 6. 11.부터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8. 10. 8.까지의 지체상금 23억 8,000만 원(= 14억 원 × 0.2% × 850일)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투입한 불량 조명등 교체비용 3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지체상금과 불량 조명등 교체비용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장래 이 사건 공사의 완성으로 원고가 가지게 될 미지급 공사대금 11억 2,000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차액에 해당하는 1,263,150,000원(= 23억 8,000만 원 + 315만 원 - 11억 2,000만 원)을 반소로써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여부

1)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 무렵 조명 설계를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6. 10.경 각 등기구 등 장비 설치 공사를 마치고 2016. 6. 13.경 조도측정결과를 포함한 준공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2016. 6. 16. 피고와 함께 조명시설의 시험 운영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23, 29 내지 31호증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위 2016. 6. 10.경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어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측정된 조명의 조도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조도에 일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이는 원고가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① 피고는 위 2016. 6. 16.경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서 원고가 설치한 조명 기구를 이용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야간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이 사건 골프장 각 홀에서 측정된 조도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홀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명의 에이밍 조정, 일부 그린의 경우에는 그린에 인접한 조명탑 이설 설치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조명기구는 일정 사용시간(500시간, 1700시간, 3000시간)이 경과하면 전력을 높게 공급하여 처음과 동일한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도가 개선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조도 기준이 원고가 설치한 조명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모성 제품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의 특성상 일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처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고, 원고와 피고도 조명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약정한 조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④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조건 제16조는 원고가 계약한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에게 확인시켜야 하고, 공사완료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원고가 계약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준공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와 함께 조명시설의 시험 운영을 마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서를 발부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피고는 조명기구가 현장에 반입된 이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4억 2,000만 원 상당의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조명 설치 공사 완료 이후에도 기준에 못미치는 조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하고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경 시행하였던 이 사건 골프장 북쪽 코스 8개 홀의 조명공사에서 미국산 필립스 제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에서도 원고가 미국산 필립스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중국산 필립스 제품을 반입하였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단지 원고가 2005.경에 있었던 공사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중도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본소 청구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도급금액 14억 원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억 원에서 원고가 피고가 이미 지급한 2억 8,000만 원과 조명탑 이설 공사에정비용 9,438,000원을 공제한 후 구하는 1,110,562,000원(= 14억 원 - 2억 8,000만 원 - 9,43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체상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공사완료일 다음 날부터의 지체상금을 구하나,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공사완료일인 2016. 6. 10.경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량 조명등 교체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불량 조명등 교체를 위하여 피고가 315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주옥

판사조현선

판사이현일